

「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1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1월 28일

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산업국장 유 경 숙

나. 제안이유

-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,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7조~제8조)
- 위원장의 직무 및 그 대행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~제11조)
- 실무위원회 및 운영세칙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2조~제13조)
- 조항별 장 구분(안 제1장~제4장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 - 「지방자치법」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일자리 정책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일자리추진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취업·창업

컨설턴트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
사료되며,

-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
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립과 구미시 관내의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
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

-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
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명시 필요
- 업무 환경 개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 필요
- 창업에 대한 일자리 대책 수립 필요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